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5년 이상 복무한 다자녀 군인에 대한 주택 우선공급〉

■ 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013호)

〈군무원에 대한 주거지원〉

■ 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040호 및
의안번호 제2211019호)

〈군인에 대한 고궁 등의 이용지원〉

■ 황 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335호)

〈군인복지기본계획 등의 주기(5년)를 3년으로 단축〉

■ 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230호)

〈재판매 금지 위반 시 복지시설 이용 제한〉

■ 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749호)

2025. 9.

국 방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송 수 환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6
1. 주택의 우선공급 대상에 5년 이상 복무한 다자녀 무주택군인 추가	6
2. 격·오지 등에서 근무하는 군무원에 대한 주거지원	11
3. 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10년 이상 근무한 군무원 추가	18
4. 군인에 대한 고궁 등의 이용지원	23
5. 군인복지기본계획 등의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27
6. 재판매 금지 위반 시 복지시설 이용 제한	30
※참고자료	36

I. 제안경위

의안번호	발의자	발의연월일	회부연월일
제2210013호	성일종의원 등 12인	2025. 4. 22.	2025. 4. 23.
제2210040호	강대식의원 등 11인	2025. 4. 22.	2025. 4. 23.
제2210335호	황희의원 등 11인	2025. 5. 2.	2025. 5. 7.
제2211019호	강대식의원 등 10인	2025. 6. 23.	2025. 6. 24.
제2211230호	김석기의원 등 10인	2025. 7. 2.	2025. 7. 3.
제2211749호	강선영의원 등 10인	2025. 7. 25.	2025. 7. 2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의안번호 제2210013호 성일종의원안

2022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공공주택 분양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자녀 기준을 현재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는 정책을 발표하며 안정적인 주거와 출산이 연계되어 있음을 강조하였음.

현행법은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주택 세대주 및 세대원에게는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10년 이상 장기복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군인의 경우 불안정한 정주 여건에 따라 복무 및 출산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음.

이에 2명 이상의 미성년자인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세대주인

군인에 대하여는 5년 이상 복무하면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자녀를 양육하는 군인의 안정적인 정주 환경을 조성하고 출산율 제고에도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2. 의안번호 제2210040호 강대식의원안

현행법은 군인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함으로써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군 숙소 등 주거지원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군무원에 대하여는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에 따라 공실이 발생하거나 가용한 범위 내에서만 격지·오지 근무자에 대해 제한적으로 주거를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국방개혁에 따른 군무원 채용 급증으로 군무원의 역할과 규모는 계속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격지·오지 등에서 근무하는 군무원에게 제공되는 주거지원은 매우 부족하여 의원면직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이에 격지·오지 등에서 근무하는 군무원의 경우 주거지원을 제공하도록 하여 군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원활한 군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

3. 의안번호 제2210335호 황 희의원안

현행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은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및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

하거나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장기복무 제대군인과 달리 현역에 복무 중인 군인에 대하여는 이러한 지원 규정이 미비하여, 군인에 대한 복지 확대를 위하여 현역 군인에 대하여 문화시설 등의 이용에 대한 지원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군인으로 하여금 고궁, 공원, 박물관 및 미술관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군인의 복지 증진 및 사기 진작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 신설).

4. 의안번호 제2211019호 강대식의원안

현행법은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주택 세대주 및 세대원에 대하여는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방개혁에 따른 군무원 채용 급증으로 군 내에서 군무원의 역할과 규모는 계속 확대되고 있으나, 군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혜택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10년 이상 복무한 군무원 중 무주택 세대주 및 세대원에 대하여도 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 군무원의 근무여건과 처우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및 제10조의2).

5. 의안번호 제2211230호 김석기의원안

현행법은 국방부장관은 5년마다 군인복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군인의 복지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열악한 복무 여건과 경제적 유인 부족 등으로 군 간부의 지원자는 감소하고, 전역하는 인원은 증가하고 있어 군 간부에 대한 복지증진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이를 위해 군인의 복지실태를 보다 시의적절하게 파악하고 그 실태조사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여 군인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군인복지기본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의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군인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이 시의적절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1항).

6. 의안번호 제2211749호 강선영의원안

군 매점 상품은 군인과 군인가족 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중 대비 저렴하게 판매되는 상품으로, 군 매점 등 복지시설 이용자는 군 매점 상품 등을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됨.

그런데 위와 같은 의무를 위반한 이용자를 제재하는 규정이나 재판매 행위를 감시하고 단속하기 위한 근거가 없어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용자의 준수사항 위반자는 복지시설등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군 매점 상품 등의 재판매 행위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이 지도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적인 이익 추구를 방지하고 군 매점 본래의 목적을 유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

Ⅲ. 검토의견

1. 주택의 우선공급 대상에 5년 이상 복무한 다자녀 무주택군인 추가(성일종의원안)

현행법은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주택 세대주 및 세대원에 대하여 주택의 우선공급을 규정하고 있음. 이 경우 입주자의 기준은 무주택기간, 복무기간, 부양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은 주택의 우선공급 대상에 5년 이상 복무한 군인으로서 2명 이상의 미성년자인 자녀를 양육하는 군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주택 세대주를 추가하고, 입주자의 기준에 가구 소득을 추가하려는 것임(성일종의원안 제10조제1항).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주택의 우선공급 등) ① 국가는 <u>10년 이상 복무한 군인</u> <u>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주택 세대주 및 세대원</u> 에 대하여 는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의 기	제10조(주택의 우선공급 등) ① - -----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u> <u>에 해당하는 군인</u> ----- ----- ----- -----.

준은 <u>무주택기간</u>, 복무기간, 부양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신 설> ②·③ (생 략)	----<u>무주택기간, 가구 소득</u>---- ----- -----. 1. <u>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주택 세대주 및 세대원</u> 2. <u>5년 이상 복무한 군인으로서 2명 이상의 미성년자인 자녀를 양육하는 군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주택 세대주</u> ②·③ (현행과 같음)
---	--

□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10년 1.23명, 2018년 0.977명, 2022년 0.78명, 2023년 0.72명으로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어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¹⁾

□ 현행법은 10년 이상 장기복무한 군인에 대하여만 주택의 우선공급을 지원하고 있음.

주택의 우선공급 제도를 살펴보면, 국토교통부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4조,제35조)」에 따라 사업주체는 아파트 분양물량 중 10% 범위에서 장기복무 군인²⁾,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에게 특별공급함

1) KOSIS(통계청, 인구동향조사)

2)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에 따른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국방부 추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국가보훈부 추천)

국방부(국군복지단)는 군에 배정된 물량에 대해 10년 이상 복무한 무주택군인 중 국방부 훈령(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에 규정된 점수순으로 특별공급 대상을 추천함.³⁾

- 현행 주택의 우선 공급제도에 따르면, 10년 이상 장기복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군인의 경우 불안정한 정주 여건에 따라 복무 및 출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2명 이상의 미성년자인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세대주인 군인이 5년 이상 복무하면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자녀를 양육하는 군인의 안정적인 정주 환경을 조성하고 출산율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

- 관계부처의 입장을 살펴보면,

국방부는 다자녀를 양육하는 군인의 안정적인 거주환경을 조성하고,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하나, 국토부에서 다자녀 가구를 위한 특별공급 제도가 별도로 운영⁴⁾되고 있으므로, 군 특별공급에서 특별히 다자녀 혜택을 부여할 필요성이 낮다는 입장임.

3) * 선정기준 : 무주택기간(38점), 근속기간(40점), 부양가족 수(12점), 장애인 가족 부양(5점),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2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3점)

* 최근 4년간 추천현황 : ('20)1,407명, ('21)1,801명, ('22)759명, ('23)486명, ('24)437명
상세한 자료는 참고자료 1. 주택의 우선공급 및 군인 특별공급 절차 등 참조.

4) * 「국토부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에 따라 다자녀가구에 대해서는 주택 특별공급*이 별도로 시행되고 있으며, 주택 건설량의 10~15% 범위에서 미성년자인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특별공급

* 군인 특별공급의 경우에도 훈령(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에 따라 부양가족 기준(최대12점) 적용중

국방부는 우수한 인력이 장기적으로 군에 복무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장기간 복무한 무주택군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한 군인 특별공급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5년 이상 복무한 무주택군인 전체로 특별공급 대상을 확대하되, 훈령 개정을 통해 군 특별공급 대상자 선정 시 다자녀 군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함으로써 개정안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는 의견임.⁵⁾

국토교통부는 2명 이상의 미성년자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는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다자녀 특별공급의 대상이 되며, 일반공급 가점제에서도 부양가족 수에 따른 높은 점수를 받아 주택공급에서 유리한 상황이기에 현재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등)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할 때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으로의 추가 지정 필요성이 높지 않으므로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따라서 개정안에 대하여는 5년 이상 복무한 다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군인의 주거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국방부가 제시한 특별공급 대상을 5년 이상 복무자로 확대하면서 다자녀 군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5) 참고자료 2. 성일종의원안 국방부 수정의견 참조. 또한 국방부는, 가구 소득 기준 추가의 경우 군속기간과 무주택기간 등을 주요 평가요소로 하는 현 제도의 일관성 있는 운영을 위하여 삭제하는 방향으로 수정동의한다는 입장임.

* 보훈부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 타기관 특별공급 대상 선정 시 가구 소득 기준 미반영
(보훈업무 시행지침 상 주택 우선공급 평가기준 : 복무기간30, 전역기간10, 무주택기간 30, 가족 수 20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2. 격오지 근무 군무원에 대한 주거지원(강대식의원안 제 2210013호)

현행 주거지원 정책의 지원 대상은 군인에 한정되고 있는데, 「군인복지기본법」 6)에 따라 군관사·독신자숙소(이하 “군 숙소”),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가 보유 또는 숙소 부족 등의 이유로 상기 2개 제도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경우 「군인보수법」 7)에 따라 주택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개정안은 격지·오지 또는 도서지역 등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특수한 지역에 근무하는 군무원에게도 군인에게 지원되는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른 주거지원(군 숙소 및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과 동등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군 숙소 지원 등) ① 국가는 군인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제9조(군 숙소 지원 등) ① -----

- 6) 「군인복지기본법」 제9조(군 숙소 지원 등) ① 국가는 군인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함으로써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군인(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및 병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0조에서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거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주거지원은 관사를 제공받지 못한 군인에 한하여 제공한다.
1. 관사 또는 독신자숙소(이하 이 조에서 “군 숙소”라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주택임대자금의 지원
 - 가. 임대차보증금 또는 전세금의 대부
 - 나. 임대차보증금 또는 전세금 용도로 대출한 자금에 대한 이자
 - 다. 월차임
- 7) 「군인보수법」 제14조(주택수당) 부대 밖에 거주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함으로써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군인(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및 병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0조에서 <u>같다</u>)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거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주거지원은 관사를 제공받지 못한 <u>군인</u>에 한하여 제공한다. 1. 2. (생략) ② 국가는 <u>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거지원을 제공받은 군인</u>에게 입주보증금 등 주거지원에 따른 금전을 징수할 수 있다. ③ . ④ (생략)	----- ----- ----- ----- -----<u>같다</u>) 및 <u>군무원(격지·오지 또는 도서 지역 등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특수한 지역에서 근무하는 군무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u>-----. ---<u>군인 및 군무원</u>-----. 1. 2. (현행과 같음) ② -----<u>제1항</u>----- ----- --<u>군인 및 군무원</u>----- ----- -----. ③ . ④ (현행과 같음)
---	--

□ 현행법상 군 숙소 제공 등 군 주거지원 정책은 ‘군인’에게 한정되어 있으며, ‘군무원’의 경우에는 다음 표의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훈령 제15조 등에 근거하여 장기공실이 예상되거나 군 숙소 여건을 고려하여 가용한 범위 내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 가용범위 내에서 주거시설을 지원하고 있음.

[표]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제15조(시설관리 등)

- ⑦ 관사 또는 간부숙소가 장기공실이 예상되는 경우, 「군무원 인사법」에 따른 군무원, 국방대학교수, 국방정책 추진을 위해 고용한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어린이집 교사 등 민간 고용 인력에 한하여 입주를 허용할 수 있다.

제36조(간부숙소의 입주신청 및 입주자 선정)

- ⑦ 각 군 등의 장은 격오지(GOP 지원부대, 서북도서 등) 근무 군무원에 대해 군 숙소 여건을 고려하여 가용한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표] 군무원 주거지원 현황(최근 3년간)

(단위 : 명)

구분(연도)	합 계	관 사	간부숙소
'22년	5,071	3,620	1,451
'23년	5,675	4,009	1,666
'24년	6,527	4,445	2,082

* 격오지 등 근무 군무원 주거지원 현황('24. 6월) : 총 1,917명 중 504명(26%) 주거지원 중

※ 자료: 국방부

이와 관련하여 군무원은 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과 동일하게 「국가공무원법」 상의 경력직공무원으로 공무원연금공단의 주거지원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군부대가 주로 주둔하는 읍·면 지역에는 공단의 주택공급이 적고, 전국단위 인사교류 대상이 되는 군무원의 경우에는 공단의 임대주택에 한번 입주하게 되면 다음 전출지에서는 3순위 이하가 되어 주거지원을 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표] 군무원·경찰·소방공무원의 공무원연금공단 주택사업 이용 현황

(단위: 세대)

구 분	운영세대	군무원 입주세대	경찰 입주세대 (해양경찰 포함)	소방공무원 입주세대
공무원 임대주택	15,696 (100%)	212 (1.4%)	2,701 (17.2%)	1,429 (9.1%)
임대 후 분양아파트	247 (100%)	5 (2.0%)	36 (14.6%)	17 (6.9%)

※ 자료: KIDA, 「군무원 주거지원 개선 방안 연구」, 2021.

이에 비해 경찰공무원은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 따라 숙소가 지원되고 있으며,⁸⁾ 소방공무원의 경우에도 강원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⁹⁾로서 관사 지원의 근거를 두고 있음.¹⁰⁾

□ 이에 개정안은 국가로 하여금 격지·오지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하는 군무원에게 군인과 동등한 주거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무원에게 안정적인 주거여건을 제공하고 군무원의 복무만족도를 높여 원활한 군의 운영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제안된 것임.

□ 최근 국방부는 국방업무의 전문성·연속성의 제고를 위해 비전투

8)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9조(직원숙소 지원) ①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함으로써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비연고지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에게 직원숙소(경찰공무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신축, 매입 또는 임차한 주거용 건물과 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공할 수 있다.

9) 「강원특별자치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제9조(복지사업의 시행) 도지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지원할 수 있다.

5. 원거리 출·퇴근 공무원에 대한 출·퇴근차량 및 관사 지원

10) 소방공무원은 국가직으로 전환되었으나, 임용·인사·예산권한은 시·도지사에 위임되어 있음.

분야 군무원 정원을 증가시키고 있으며,¹¹⁾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서도 국방 관련 업무의 전문성·연속성을 높이기 위해 군무원 등 민간인력의 활용을 확대하여야 한다고 규정¹²⁾하고 있는 등 병역자원의 감소에 따라 군무원의 중요성은 증대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이 주거지원 대상을 군인으로 한정하고 군무원을 제외함에 따라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가용한 범위 내에서만 격오지 근무자에 대해 제한적으로 주거를 지원하는 현행 제도는 군무원의 경제적 부담을 심화시켜 직무만족도 저하에 따른 우수인력 유출도 우려되는 실정임.

2021년 한국국방연구원(KIDA) 주관으로 군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1,320명 대상)의 99.2%가 안정적인 복무여건을 위해서는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83.7%는 시급하게 군무원 주거지원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하는 등¹³⁾ 군무원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이들에게 안정적인 주거여건을 제공하여 복무만족도를 높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현행 「군인복지기본법」은 제명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군인이 임무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군인에 대한 복지정책의 수립 및 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¹⁴⁾

11) 군무원 정원 : ('17년) 2.6만명 → ('21년) 4.0만명 → ('25년) 4.7만명

12)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13조(민간인력의 활용확대) ①국군의 부대와 기관은 국방 관련 업무의 전문성·연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군무원 등을 포함한 민간인력의 활용을 확대하여야 한다.

13) 참고자료 3. 군무원 주거지원 관련 설문조사 결과 참조.

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군인이 아닌 군무원의 주거지원 제도를 해당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 측면에서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함께 필요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현재 군무원 근무 인원이 증가하고 역할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무원에 대한 복지정책을 규정하는 법률은 부재함. 따라서 군무원 복지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군인복지기본법」의 전면 개편(법률명 변경 포함)을 통한 군무원까지 적용대상 확대 또는 군무원 복지 관련 법률 신규제정 등의 방안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개정안에 대해 국방부는 군무원의 정원 및 임무 확대에도 불구하고 제한적 주거지원으로 인해 우수인력 유출이 우려되며, 군인, 경찰·소방 등 他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도 야기되므로 군무원 주거지원 자체는 필요하다는 입장임.

다만, 현행 군인 주거지원 제도인 ① 군 숙소인 관사 또는 독신자숙소, ②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 중, ②의 경우 현재 군인 복지기금 재원부족으로 인해 기금 수입으로 일반회계전입금 편성과 자체수입 증대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¹⁵⁾에서 군무원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① 관

14) 「군인복지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인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군의 사기를 높이며 나아가 군인으로 하여금 임무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군인에 대한 복지정책의 수립 및 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5) 국방부에 따르면 2025년 6월 기준, 군인 지원인원을 전년 대비 감축(6,951 → 4,653명)하여 운영 중이며 일반회계 전입금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는 상황임.

사·독신자숙소(군 숙소) 지원만 격오지에 근무하는 군무원에
제도 적용하자는 입장임.¹⁶⁾

기획재정부는 현재도 훈령에 따라 공실 발생시 숙소를 제공중으로 법
개정 실익이 높지 않고, 군무원은 책임·신분, 업무난이도, 보수 측면
에서 공무원과 유사하여 주거지원 의무조항 신설 시 일반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음. 또한, 기획재정부는 격오지·접
적지역 등 근무 군무원에게 특수지 근무수당(월 최대 12만원)이 지급
되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어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참고로, 제22대 국회에서는 김성원의원과 송옥주의원이 격오지
근무 군무원에 대한 주거지원을 신설하려는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하였고,¹⁷⁾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미 상정·
축조심사¹⁸⁾ 등을 거쳐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으므로, 동 개정안도
향후 기 발의 개정안 2건과 함께 병합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16) 참고자료 4. 강대식의원안 국방부 수정의견

17) 김성원의원안 의안번호 제2201259호, 송옥주의원안 의안번호 제2200740호

18)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2024년 9월 23일). 격오지 군무원에 대한 주거지
원의 필요성에는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군인복지기본법」에 군무원에 대한 지원을 신설하는
것이 법체계상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군무원들이 군 관사라든지 독신 숙소를 지
원받을 수 있는 영역을 조금 더 넓혀 나가는데 이제 법률적으로 모든 군무원들을 다 해 줘야
된다고 하게 되면 이를 준비해야 하는 정부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국방부의 의견이 함께
제시되어 계속 심사하기로 함.

3. 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10년 이상 복무한 군무원 추가(강대식 의원안 제2211019호)

개정안은 기관 추천 주택 우선공급(군인 특별공급) 대상에 10년 이상 복무한 군무원을 추가하고, 군인공제회가 공공택지를 우선공급받아 시행하는 무주택 군인 주택 공급사업 대상에 군무원을 추가하며, 군유휴지를 매각하여 시행하는 무주택 군인 주택 공급사업 대상에 군무원을 추가하려는 것임 (안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0조의2).¹⁹⁾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법률 제20638호 군인복지기본법 일부 개정법률	법률 제20638호 군인복지기본법 일부 개정법률
제10조(주택의 우선공급 등) ① 국가는 10년 이상 복무한 <u>군인</u>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주택 세대주 및 세대에 대하여는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의 기준은 무주택기간, 복무기간, 부양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주택의 우선공급 등) ① ----- ----- <u>군인 또는 군무원</u> ----- ----- ----- ----- ----- -----.
②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는 <u>군인</u> 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무주택 <u>군인</u> 을 대상으로 주	② ----- ----- ----- ----- <u>군인 또는 군무원</u> ----- ----- ----- <u>군인 또는 군</u>

19) 기타 개정사항으로는 제10조제4항에서 군인 또는 **군무원** 대상으로 주택 공급을 위하여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제10조의2에서 군인 또는 **군무원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분양가격 제한 등을 규정함.

현행	개정안
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택지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하여 공급할 수 있다. 다만,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의 경우 공공주택지구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국방·군사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함으로써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을 무주택 <u>군인</u>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매각하려는 경우 <u>군인</u>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우선하여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유재산법」 제49조에 따라 해당 재산의 용도와 그 용도에 사용하여야 할 기간을 정하여 매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택지를 공급받거나 제3항에 따라 일반재산을 매입하여 무주택 <u>군인</u>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려는 자(이하 “사업주체”라 한다)는 주택 공급을 위하여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생략) 제10조의2(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 ① 제10조제2항에 따라 택지를 공급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일반재산을 매입하여 무주택 <u>군인</u>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에 관한	<u>무원</u>----- ----- ----- ----- ----- -----. ③ ----- ----- -----<u>군인 또는 군무원</u>----- -----<u>군인 또는 군무원</u>----- ----- ----- ----- -----. ④ ----- ----- -----<u>군인 또는 군무원</u>----- ----- ----- ----- -----.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의2(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 ① ----- ----- -----<u>군인 또는 군무원</u>----- -----

현행	개정안
「주택법」 제5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택법」 제57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방부장관”으로, “제54조”는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제4항”으로 본다.	----- ---. ----- ----- ----- -----.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 현행법 제10조제1항은 10년 이상 장기복무한 군인에 대하여만 주택의 우선 공급을 지원하고 있고,²⁰⁾ 제10조제2항은 공공주택사업자(LH 등)이 군인공제회가 무주택군인 대상 주택 공급 사업 시행 시 공공택지 우선 공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0조제3항은 군유휴지를 무주택군인 대상 주택공급 용도로 매각하는 경우 군인공제회에 우선 매각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최근 국방부는 국방업무의 전문성·연속성의 제고를 위해 비전투분야 군무원 정원을 증가시키고 있으며,²¹⁾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서도 국방 관련 업무의 전문성·연속성을 높이기 위해 군무원 등 민간인력의 활용을 확대하여야 한다고 규정²²⁾하고 있는 등 병역자원의 감소에 따라 군무원의 중요성은 증대되고 있음.

20) 주택의 우선공급 제도를 살펴보면, 국토교통부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4조,제35조)」에 따라 사업주체는 아파트 분양물량 중 10% 범위에서 장기복무 군인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에 따른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국방부 추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국가보훈부 추천),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에게 특별공급함.

21) 군무원 정원 : ('17년) 2.6만명 → ('21년) 4.0만명 → ('25년) 4.7만명

22)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13조(민간인력의 활용확대) ①국군의 부대와 기관은 국방 관련 업무의 전문성·연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군무원 등을 포함한 민간인력의 활용을 확대하여야 한다.

그러나 군무원의 역할과 규모가 확대되는 것에 비하여 군무원에 대한 주거지원 등의 생활안정에 대한 혜택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10년 이상 복무한 군무원 중 무주택 세대주 및 세대원에 대하여도 군인과 동일하게 주택 또는 공공택지 등의 우선 공급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인 정주 환경을 조성하고 생활안정에 기여하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현행 「군인복지기본법」은 제명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군인이 임무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군인에 대한 복지정책의 수립 및 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²³⁾ 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군인이 아닌 군무원의 주거지원 제도를 해당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 측면에서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함께 필요할 것으로 보임.

또한, 군무원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주택지원(임대주택, 임대 후 분양주택 등) 대상이라는 점에서 「군인복지기본법」에서 추가적으로 주택의 우선공급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 국방부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동의하나, 동일하게 공무원연금법에

23) 「군인복지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인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군의 사기를 높이며 나아가 군인으로 하여금 임무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군인에 대한 복지정책의 수립 및 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따른 주택지원을 받는 타 직렬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현행 법체계 내에서도 군인공제회 시행 주택공급 시 군무원 분양이 가능하므로,²⁴⁾ 법 개정의 실효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24) 국방부 훈령에 따라 무주택 군인 대상 1차 분양 이후 군인공제 회원(군무원 포함) 대상 2차 분양 시행 (군무원 분양 현황 : '14년 동탄신도시 24명, '20년 고덕신도시 18명, '22년 파주운정신도시 1명)

4. 군인에 대한 고궁 등의 이용 지원(황회의원안 제2210335호)

개정안은 군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관리 또는 운영하는 고궁 및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황회의원안 제11조의3 신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11조의3(문화시설 등의 이용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군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궁, 공원, 박물관 및 미술관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현역 군인의 경우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자유가 일정 부분 제약되고,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극히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체계에서는 제대군인에 대해서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²⁵⁾에 근거하여 고궁 및 공원 등의 무료·할인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5)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공공시설의 이용)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및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이에 개정안은 제대군인과 동일하게 현역군인에게도 이러한 혜택을 부여하여 군인의 문화시설 이용 활성화와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임.

참고로, 현재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복궁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시설 뿐만 아니라 민간 문화시설인 영화관 및 식당, 놀이공원 등에서도 현역군인에게 관람료 또는 입장료를 무료로 하거나 할인해주는 경우를 다수 찾아볼 수 있는 상황임.

- 개정안에 대해 국방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군인복지를 장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개정안에 동의하는 입장이며,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도 현역 군인에 대해 이미 고궁 관람요금 감면 대상자로 정해 시행²⁶⁾하고 있다는 이유로 개정안에 찬성하고 있음.

이에 비해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는 현재 대부분의 국립박물관 및 공립박물관 등의 상설전 및 대부분의 국립·도립·군립공원이 무료로 운영되고 있다는 이유로 개정안의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입장임.²⁷⁾

- 동 개정사항은 제21대 국회에서 윤후덕의원 및 김성원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²⁸⁾에 포함되었던 사항으로, 당시 국방위원회의 대안에 반영되어 제안되었으나,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26) 「문화유산의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27) 참고자료 5. 관련 법률 규정

28) 각각 의안번호 제2121328호, 제2121056호

심사과정에서 대안에 포함되었던 동 개정사항 이외의 다른 개정 사항²⁹⁾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인하여 해당 대안이 임기 만료 폐기된 바 있음.

- 따라서 개정안에 대하여는 군인에 대한 예우와 삶의 질 향상 측면의 필요성과 현실적으로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적지 않은 고궁과 공원 및 박물관 등이 군인에 대하여 무료 입장을 적용하고 있어 이로 인한 재정수입의 감소도 극히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와 같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또는 운영하는 시설에 한정하여 이용지원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자구를 수정하여 입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³⁰⁾

[수정의견]

현 행	개 정 안	수정의견
<신 설>	제11조의3(문화시설 등의 이용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군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고궁, 공원, 박물관</u>	제11조의3(문화시설 등의 이용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군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국가나 지방자치단</u>

29) 기획재정부는 대안의 주요 내용 중 격오지 근무 군무원에게 군 숙소를 지원하는 개정사항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30)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공공시설의 이용)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및 공원 등의 시설에 대한 이용지원만을 규정하고 있음.

제23조 (공공시설의 이용)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및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u>및 미술관 등의 시설</u> <u>을 무료로 이용하게</u> <u>하거나 그 요금을 할</u> <u>인하여 이용하게 할</u> <u>수 있다.</u>	<u>체가 관리하거나 운</u> <u>영하는 고궁, 공원,</u> <u>박물관 및 미술관 등</u> <u>의 시설을 무료로 이</u> <u>용하게 하거나 그 요</u> <u>금을 할인하여 이용</u> <u>하게 할 수 있다.</u>
--	---	--

5. 군인복지기본계획 등의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김석기의원안 제2211230호)

개정안은 군인복지기본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의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1항).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군인복지기본계획의 수립 · 시행) ① 국방부장관은 <u>5년</u> 마다 제8조에 따른 군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인복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확정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6조(군인복지기본계획의 수립 · 시행) ① ----- <u>3년</u> ----- ----- ----- ----- ----- ----- ----- ----- -----.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조(실태조사) ① 국방부장관은 <u>5년</u> 마다 군인의 복지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① ----- <u>3년</u>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 법 제6조제1항은 국방부장관이 5년마다 제8조에 따른 군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인복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확정토록 함.

법 제7조제1항은 국방부장관이 5년마다 군인의 복지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토록 규정함.

□ 그러나 최근 어려운 복무 여건과 경제적 유인 부족 등으로 군 간부의 지원자는 감소하고, 군간부 중 전역하는 인원은 증가하고 있어 군 간부에 대한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이를 위해 군인의 복지실태를 보다 시의적절하게 파악하고 그 실태조사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여 군인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이 보다 적시에 수립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개정안은 군인복지기본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의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군인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이 시의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음.

□ 다만, 국방부 소관 주요 법률들은 아래 [표]와 같이 기본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군인복지기본계획의 주기만 3년으로 단축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국방분야 주요 기본계획 수립 주기]

근거 법률	계획(정책)명	수립 주기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군보건의료발전계획	5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군인복무기본정책	5년
국방과학기술 혁신 촉진법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5년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국방개혁기본계획	5년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	5년

□ 국방부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군인복지기본계획은 5년 단위 국방기획문서³¹⁾인 국방전략서³²⁾에서 제시하는 국방목표의 구현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3년으로 단축하는 것은 일관성 있는 정책구현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³³⁾

31) 「국방기획관리기본훈령」 국방부 훈령 제2906허('24.3.5.)에 따른 국방기획문서에는 국방전략서, 국방개혁기본계획, 국방기획지침 등이 있음.

32) 국방전략서(NDS: National Defense Strategy)

- 목적:국가안보전략지침에 제시된 국가안보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방분야의 기준문서로서 전략환경평가, 국방전략목표 및 국방정책의 추진방향을 제시
- 작성절차:매 5년 주기로 대통령의 안보전략 및 국방지침을 반영한 국가안보전략지침과 최근의 국방정보판단 내용 등을 기초로 대상기간 동안의 국방정책방향 및 목표가 제시된 국방전략서 작성지침을 수립
- 국방부 관련부서는 필요시 중·장기 정책목표 및 추진지침이 제시된 분야별 정책서를 국방전략서 발간주기와 동일하게 부록으로 발간할 수 있다.

※ 「국방전략서」는 '23년 최초로 발간된 국방 최상위 기획문서로, 기존 국방기본정책서*를 대체함. *1999년부터 5년 주기 발간

33) 국방부는 국방정책의 최상위 문서인 「국방전략서」를 '23년 발간하면서 5년 주기로 국방목표를 설정하고 군사력 건설 및 유지를 위한 가용재원과 인적·물적 자원 등을 판단하여 중·장기 국방정책을 수립하고 국방목표를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음. '23년 발간한 「국방전략서」(5개년)에서 제시한 중장기 국방정책에 맞춰 국방 복지정책의 목표 및 방향을 수립하고 세부 추진과업을 구체화하기 위해 '23년에 군인복지기본계획이 작성되었으며, 매년 5개년 단위로 작성되는 「국방중기계획」에 대상 기간의 군인복지 추진과제 이행을 위한 연도별 재원을 반영하고 있음. 한편, 군인복지기본계획은 국정과제와의 연계성과 관계부처의 의견을 받아 대통령 승인을 받는 문서로 약 6개월의 행정적 시간이 소요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행 5년 주기 작성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6. 재판매 금지 위반 시 복지시설 이용 제한(강선영의원안 제 2211749호)

개정안은 군 매점 상품 등을 “영리의 목적으로” 재판매 금지를 규정하고,³⁴⁾ 재판매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와 그 밖에 해당 복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칠 우려가 있어 국방부장관이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복지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며, 국방부장관이 재판매 행위를 예방·단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도·감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5조).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5조(군인복지시설 이용자의 준수 사항) 군 매점 등 복지시설 이용자는 군 매점 상품 등을 <u>재판매</u> 하여서는 아니 된다. <u><신 설></u>	제15조(군인복지시설 이용자의 준수 사항 등) ① ----- <u>영리</u> 의 목적으로 재판매---. ②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복지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1항을 위반하여 군 매점 상품 등을 영리의 목적으로 재판매하거나 재판매하려한 자 또는

34) 현행 규정은 영리 목적으로 한정하지 않고 “군 매점 상품 등을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신 설> <신 설>	<u>재판매를 알선한 자</u> <u>2. 그 밖에 해당 복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칠 우려가 있어 국방부장관이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u> <u>③ 제2항에 따른 군인복지시설의 이용 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u> <u>④ 국방부장관은 군 매점 상품 등의 재판매 행위를 예방·단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u>
---------------------------------------	--

□ 군 매점 및 군 마트 등은 「군인복지기본법」 제14조(군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³⁵⁾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군인의 복지향상을 위해 대다수 상품 등을 일반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음.

이러한 점을 이용해 일부 군 매점 등 군인복지시설 이용자와 그 가족 등이 해당 시설에서 구매한 대량의 물품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반복적으로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등의 오픈마켓이나 재판매업체 등을 활용하여 재판매하는 등의 거래행위가 적지 않게 이루어진 바 있음.

35) 제14조(군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① 국방부장관은 군인의 복지증진과 체력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6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복지시설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복지시설등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복지시설등을 이용할 수 있는 군인 또는 군인가족 외의 사람에게도 복지시설등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이러한 재판매행위를 통해 영리를 추구하거나 일반 국민들이 군 매점 상품 등을 구매하게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이용대상을 군인 및 군인가족등으로 한정해놓은 「군인복지기본법」 등 관련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시중에 비하여 저렴한 군 매점 등의 물품이 일반 시장으로 적지 않게 유입되어 시장의 유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위와 같은 재판매 행위를 금지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이에 국방위원회는 재판매행위를 금지하는 제15조(군인복지시설 이용자의 준수사항)를 신설하는 내용의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2024년 11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하였고 2024년 12월 3일 공포되었음.

그러나 현행 제15조 재판매행위 금지규정은 재판매의 목적 제한이 없어 지인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비영리적 대리구매까지 포괄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의무를 위반한 이용자를 제재하는 규정이나 국방부장관이 재판매 행위를 감시하고 단속하기 위한 근거가 없어 재판매 금지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영리 목적의 재판매행위에 한정하여 금지하고 위반자 등에 대한 복지시설 등의 이용 제한과 국방부장관의 지도·감독 규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판매금지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군인복지시설 본연의 취지에 맞는 이용을 장려하고, 시장의 유통질서를 보호하며, 실효적으로 영리목적의 재판매행위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한편, 개정안과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정하여 재판매행위를 금지하는 경우에는 금지 위반의 대상범위가 다소 축소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한 대량 재판매행위 등을 금지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명확해지는 측면이 있으나, ① 지인 등을 대상으로 군 매점 상품 가격과 동일한 금액을 대가로 이루어지는 반복적 대리구매 행위나 ② 시장의 수요 감소 또는 거래 위축으로 인하여 영리를 얻지 못한 재판매행위들은 군 매점 상품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측면이 있으나 사후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가능해질 수 있어 금지 대상이 되는 영리 목적의 재판매행위의 범위가 불명확해지는 측면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제15조(군인복지시설 이용자의 준수사항)은 당초 “영리를 목적으로” 한정하지 않고 재판매행위 전반을 금지한 것은 입법선례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중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제공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재판매행위 전반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군 매점 등의 상품이 무분별한 재판매로 인한 유통질서 확립과 법에서 규정한 군 복지시설 이용자에 한정하고 있는 점들을 감안한 것으로 보임.

**<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재판매
금지 규정**

제11조 (사용자의 준수사항)

- ①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자는 판매대행점이나 가맹점에 지역사랑상품권의 환전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 (위반행위의 조사 등)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발생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어 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대행점 및 가맹점에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생략)

□ 따라서 개정안의 입법 시 “영리를 목적으로” 재판매 금지를 규정할지 여부에 대하여는 군 매점 등이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는 운영 및 유통질서 확립 측면에서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지 여부, 영리 목적의 범위에 대한 명확성 측면 및 입법 선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문 의 처
02)6788-5304

※ 참고자료 1. 주택의 우선공급 및 군인 특별공급절차 등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01471호)

제35조(국민주택의 특별공급) ① 사업주체는 — 국민주택을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기준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생 략)

1. 「독립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 1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 2의2. 종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
3.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5. 「참전유공자에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6.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7.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에 따른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제36조(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의 특별공급) ① 사업주체는 —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을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기준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생 략)

1~7. (생 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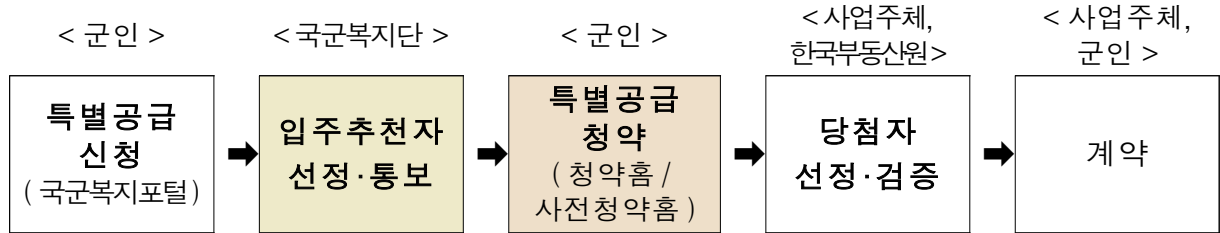
8. 제35조 제1항 제6호, 제7호, 제9호, 제10호, 제15호, 제17호, 제19호, 제20호, 제22호부터 제24호까지, 제26호에 해당되는 자

제40조(다자녀가구 특별공급) ① 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출산 장려의 목적으로 지역별 출산율, 다자녀가구의 청약현황 등을 고려하여 입주자모집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15퍼센트)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 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20퍼센트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특별공급할 수 있다.

○ 군인 특별공급 절차



○ 군인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기준(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 평가요소 및 배점

구 분	계	무주택기간	근속기간	기타
배 점	100	38	40	22

• 요소별 세부배점 기준

- 무주택기간

무주택 기간	2년 미만	3년 미만	4년 미만	5년 미만	6년 미만	7년 미만	8년 미만	9년 미만	10년 미만	11년 미만
점 수	0	2	4	6	8	10	12	14	16	18
무주택 기간	12년 미만	13년 미만	14년 미만	15년 미만	16년 미만	17년 미만	18년 미만	19년 미만	20년 미만	20년 이상
점 수	20	22	24	26	28	30	32	34	36	38

- 근속기간

근속 기간	11년 미만	12년 미만	13년 미만	14년 미만	15년 미만	16년 미만	17년 미만	18년 미만	19년 미만
점수	15	16	17	18	19	20	21	22	23
근속 기간	20년 미만	21년 미만	22년 미만	23년 미만	24년 미만	25년 미만	26년 미만	27년 미만	28년 미만
점수	24	25	26	27	28	29	30	31	32
근속 기간	29년 미만	30년 미만	31년 미만	32년 미만	33년 미만	34년 미만	35년 미만	35년 이상	-
점수	33	34	35	36	37	38	39	40	

• 기 타

1) 부양가족수

부양가족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이상
점 수	2	4	6	8	10	12

2) 장애인 가족 부양 여부(2명 이상일 경우 점수가 높은 1명만 인정)

장애등급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점수	2	5

3)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부양 여부

부양기간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점 수	1	2

4) 주택법 제75조에 따른 입주자 저축(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가입기간

구 분	2년 미만	2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점 수	1	2	3

○ 군인 특별공급 추천 현황(최근 5년) (단
위: 명)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신청자	20,083	18,654	5,642	2,660	2,078
입주추천자	1,407	1,801	759	486	4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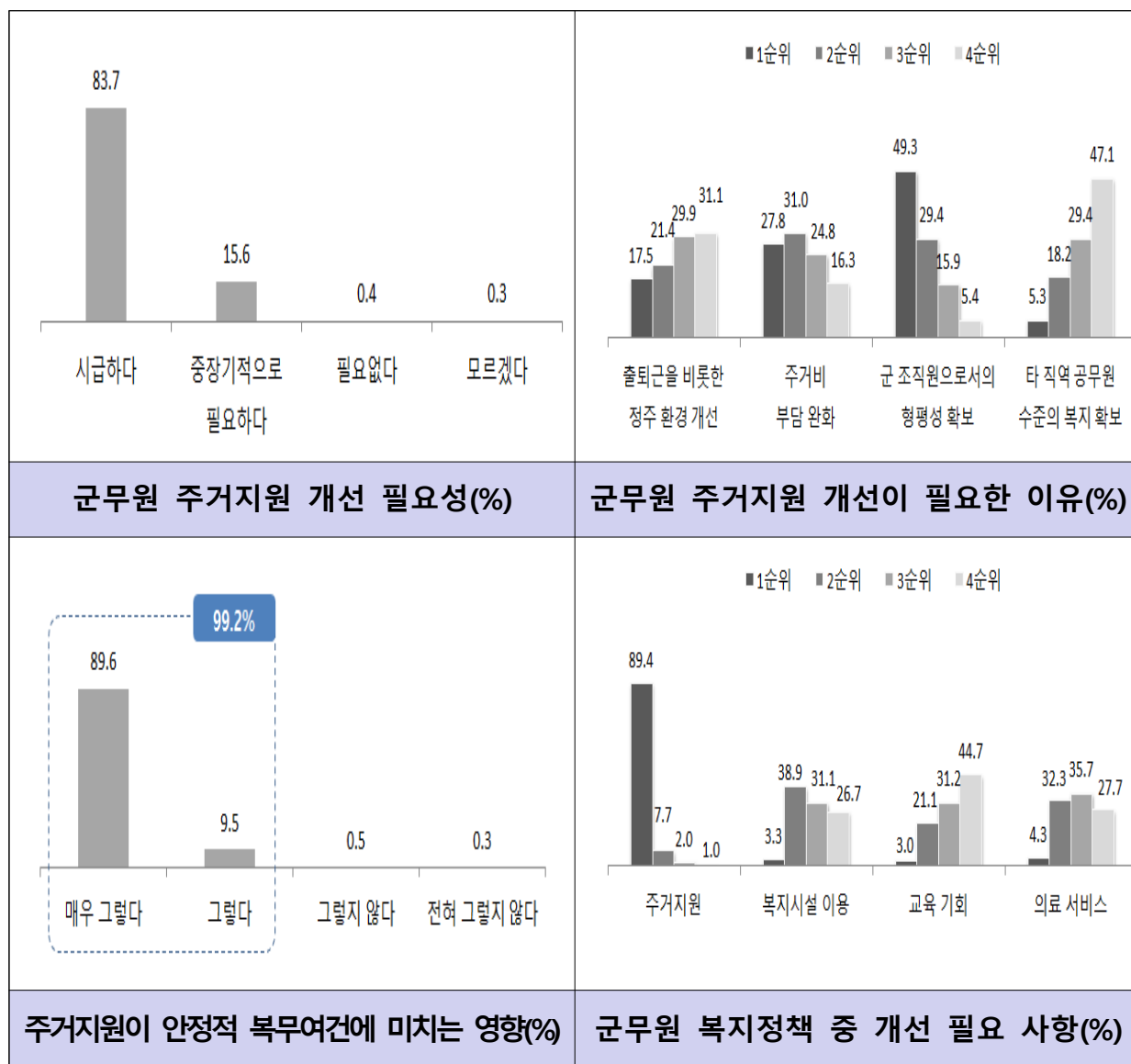
○ 국가보훈부 기관 특별공급 평가기준(2025년 보훈업무 시행지침 별지 제2호)

평가 요소	복무 기간	전역 기간	무주택 기간	가족수	우선공급 미지원 여부	대부지 원 여부	청약포 기 여부	계
배점	30	10	30	20	10	△ 15	△ 20	100

※ 참고자료 2. 성일종의원안 국방부 수정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제10조(주택의 우선공급 등)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군인</u>에 대하여는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의 기준은 무주택기간, <u>가구 소득</u>, 복무기간, 부양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u>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주택 세대주 및 세대원</u> 2. <u>5년 이상 복무한 군인으로서 2명 이상의 미성년자인 자녀를 양육하는 군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주택 세대주</u> 이 법은 공포 후 <u>6개월</u>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0조(주택의 우선공급 등) ① 국가는 <u>5년 이상 복무한 군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주택 세대주 및 세대원</u>에 대하여는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의 기준은 무주택기간, 복무기간, 부양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삭 제) 2. (삭 제) 이 법은 공포 후 <u>1년</u>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참고자료 3. 군무원 주거지원 관련 설문조사 결과



* 자료: KIDA, 「군무원 주거지원 개선 방안 연구」, 2021.

※ 참고자료 4. 강대식의원안 국방부 수정의견 참조

개 정 안	국방부 수정의견
제9조(군 숙소 지원 등) ① 국가는 군인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함으로써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u>군인</u>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및 병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0조에서 같다) <u>및 군무원(격지·오지 또는 도서지역 등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특수한 지역에서 근무하는 군무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거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주거지원은 관사를 제공받지 못한 <u>군인 및 군무원</u>에 한하여 제공한다. 1. 관사 또는 독신자숙소(이하 이 조에서 “군 숙소”라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주택임대자금의 지원 <신 설>	제9조(군 숙소 지원 등) ① 국가는 군인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함으로써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u>군인</u>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및 병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0조에서 같다)<u>에게</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거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주거지원은 관사를 제공받지 못한 <u>군인</u>에 한하여 제공한다. 1. 관사 또는 독신자숙소(이하 이 조에서 “군 숙소”라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주택임대자금의 지원 ② 국가는 <u>격지·오지 또는 도서지역 등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특수한 지역에 근무하는 군무원에게 제1항제1호에</u> 해당하는 주거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제9조(군 숙소 지원 등)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주거지원을 제공받은 군인 및 군무원에게 입주보증금 등 주거지원에 따른 금전을 징수할 수 있다. ③·④ (생략)	제9조(군 숙소 지원 등) ③ 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거지원을 제공받은 군인 및 군무원에게 입주보증금 등 주거지원에 따른 금전을 징수할 수 있다. ④·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u>6개월</u>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u>1년</u>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참고자료 5. 관련 법률 규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5조 (관람료와 이용료)

- ①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관람료, 그 밖에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의 이용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
- ② 국립 박물관이나 국립 미술관의 관람료, 그 밖에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의 이용에 대한 대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자연공원법」

제37조 (입장료 및 사용료의 징수)

- ①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에 들어가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공원관리청이 설치한 공원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의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장료 및 사용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공원의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의 경우 그 공원관리청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

- ①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는 그 문화유산을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관리단체가 지정된 경우에는 관리단체가 징수권자가 된다.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경우 조례로 각각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주민 등에 대하여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1조의2 (관람료의 감면)

-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청장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3. 해당 문화유산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로 한정한다)의 주민
 4.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관람료를 감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② 제1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율에 대해서는 국가유산청장이 정한다.
- ③ (생략)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궁능유적본부훈령)

별표 1 관람요금 감면대상자 및 감면율(제11조관련)

·현역군인 감면율 100%

「군인복지기본법」

제 14 조 (군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 ① 국방부장관은 군인의 복지증진과 체력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6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복지시설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국방부장관은 복지시설등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복지시설등을 이용할 수 있는 군인 또는 군인가족 외의 사람에게도 복